

부산공유대학 융합인재지원금 지급 지침

제정 2023. 12. 21.

개정 2024. 6. 18.

개정 2024. 8. 13.

개정 2025. 7. 17.

개정 2025. 8. 28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산공유대학(이하 “공유대학”이라 한다) 참여학생들의 온·오프라인 및 대학 간 이동수업 여건 보장과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생활지원금 성격의 융합인재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공유대학 교양교육과정을 제외한 융합전공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.

제3조(지급대상 및 지급금액) ① 학부생의 경우 이수 과정에 상관없이 매 학기 이수한 학점(계절수업 포함)에 따라 지급하되 3학점당 50만원(1학점은 16만원, 2학점은 33만원 산정),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1. 복수전공 : 최대 이수학기는 4학기이며, 공유대학 재학 중 최대 지원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.
2. 부전공 : 최대 이수학기는 4학기이며, 공유대학 재학 중 최대 지원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.
3. 마이크로 디그리 : 최대 이수학기는 4학기이며, 공유대학 재학 중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

② 대학원생의 경우 이수 과정에 상관없이 매 학기 이수한 학점(계절수업 포함)에 따라 지급하되 3학점당 100만원, 학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.

1. 융합전공 : 최대 이수학기는 6학기이며, 대학원 재학 중 최대 지원금액은 400만원으로 한다.
2. 마이크로마스터 : 최대 이수학기는 6학기이며, 대학원 재학 중 최대 지원금액은 200만원으로 한다.

③ 융합인재지원금은 연도별 예산계획에 따라 학생 1인당 확정된 금액을 학기별로 지급하며, 사업의 종료 또는 사업 예산의 변경 등에 따라 매년 지급금액이 변경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.

④ 공유대학 교과목 개설 상황에 따라 최대 이수학기는 추가할 수 있다.

제4조(지급기준) ① 융합인재지원금은 장학금이 아닌 학생들의 수업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지원금 및 업무지원에 대한 보상적 지원금으로 국가 및 교내·교외 장학금 등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.

② 재수강 교과목 학점은 융합인재지원금 지급 기준 학점에 포함하지 않는다(단, F등급 재수강의 경우 포함).

제5조(지급시기) ① 제3조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매 학기 마지막 월에 융합인재지원금을 지급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거나 예산의 편성 지연 등으로 인하여 융합인재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. 이 경우 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대학은 자체 대학 홈페이지에 지원금 지연지급 사유 및 예상 지급시기 등을 포함하여 공지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급방법) ① 융합인재지원금 지급 대상 학생은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하며, 융합인재지원금 지급은 학생의 원소속대학이 담당하고, 필요시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융합인재지원금은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.

③ 학생이 융합인재지원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,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융합인재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
제7조(환수대상 및 기준) ① 학생에게 지급되는 융합인재지원금의 환수대상 및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 이미 지급된 융합인재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.

2. 학생이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융합인재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학기 융합인재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융합인재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환수대상 학생은 해당 금액을 원소속대학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급의 중단) ① 융합인재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시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(단,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근로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시에는 융합인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)

② 조기취업자에 대한 융합인재지원금은 4대보험 가입 전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며, 4대보험 가입 이후의 융합인재지원금은 지급을 중단한다.

③ 제3조의 학생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융합인재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.

1. 휴학 및 제적 또는 취업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
 2. 공유대학 이수를 중도에 포기한 자(학기 중 교과목 이수를 완료하지 않고 포기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,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)
 3. 공유대학 융합전공 이수학기 또는 이수학점을 초과한 자
 4. 원소속 대학의 제반 지침 위반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④ 다만, 다음 각호의 경우 융합인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1. 공유대학 교육과정 이수 중, 휴학하고 복학하여 융합전공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
 2. 이수학기를 초과하더라도 인정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
- ⑤ 사업의 종료 등 부득이한 경우 융합인재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, 이 경우 각 융합전공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1주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
- 제9조(기타사항)** 융합인재지원금 지급 등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기본계획 및 기타 예산 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 (2024.3.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4.6.18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4.8.13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5.7.17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5.8.28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